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미래통합당 강남구 제6선거구, 이석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의 내용은

상업지역에 한하여 맞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현행 건축법은 상업지역 등에서의 맞벽건축을 허용하면서

맞벽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적용되는

50cm 이격거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는
이를 5층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맞벽건축물의 상단에 단이 생겨

도시미관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층·고밀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에 한하여

맞벽건축물 층수 규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